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바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 5. 1 . - - - - - 최광렬의원의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06. 5.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8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06.5.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2호 2006.2.8)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유급화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바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안 제1조, 제3조)
(의정활동바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개정 조례 안은 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올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지난 5월 1일자로 우리 구의회에 통보 온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금액에 맞게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 온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의원 1인기준 연간 총 지급액은 31,080천원으로 작년 21,200천원보다 9,880천원이 추가 인상 되었고, 총 연간 소요예산액은 15명의 의원정수 대비 466,200천원으로 작년 16명의 339,200천원보다 127,200천원이 추가 소요됨
- 참고로 이는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중 상위 6번째로서 총 금액으로는 중간정도(진구 36,000원, 서구25,320천원)에 속함

- 현재 우리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5.8%로서 사실상 자주재원으로는 직원 인건비와 경상 적경비 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마지막 까지 심사숙고하며 고심 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 생각되고 또한 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